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0.

발 의 자:김한규·모경종·강경숙

정일영 · 안호영 · 서미화

박민규 • 서영석 • 정준호

위성곤 · 전현희 · 이성윤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.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,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.

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.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·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.

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 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14조, 제18조 및 제40조, 제41조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(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다)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.

제14조 후단 중 "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"를 "폐회 중에"로 한다.

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(제2항에 따라 그 후임으로 보임되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을 포함한다)은 임기만료 후에도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.

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 다만, 제40조제3

항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의 직도 유지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· | 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ㆍ |
| ② (생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, |
| |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 |
| | 된 의장과 부의장(제2항에 따 |
| | 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|
| | 부의장을 포함한다)은 임기만 |
| | 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 |
| | 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. |
| 제14조(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 | 제14조(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 |
| 행)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 | 행) |
| 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| |
| 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 | |
| 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 | |
| 행한다. 처음 선출된 의장과 | |
|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 | |
| 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 | |
| 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| - <u>폐회 중에</u> |
| <u>중에</u> 의장·부의장이 모두 궐 | |
| 위(闕位)된 경우에도 또한 같 | |
| 다. | |
| 제18조(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| 제18조(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|
| 직무대행) 의장 등의 선거에서 | 직무대행) |
| | |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 선(最多選) 의원이, 최다선 의 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 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 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 장을 선거할 때

3. ~ 5. (생략)

제40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• ② 제40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• ② (생 략)

<신 설>

| | |
|------|--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
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3. ~ 5.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 된 상임위원(제2항에 따라 그 후임으로 보임되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을 포함한다)은 임기 만료 후에도 다시 상임위원으 로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 지한다.

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\sim ③ (생 \mid 제41조(상임위원장) ① \sim ③ (현

략)

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⑤ (생 략)

행과 같음)

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 위원의 임기와 같다. 다만, 제4 0조제3항의 경우에는 상임위원 장의 직도 유지된다.

⑤ (현행과 같음)